

【 3 】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년월일 2001. 10.

제 출 자 양 주 군 수

1. 개정이유

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 가구수의 자치단체별 격차를 해소하여 복지행정서비스 수준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한 사회복지직공무원확대배치지침에 의한 정원 2명 증원과 광역상수도6단계수수시설 운영에 따른 통합가압장 운영인력(2명)의 증원 승인으로 인해 총정원을 증원하는 한편, 읍면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설치 운영중인 기구·정원의 설치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부칙 조항에 한시기한을 명시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총정원을 515명에서 521명으로 6명을 증원함(안 제2조)

• 집행기관 : 510명 (중전 504명)

나. 부칙중 읍면기능전환 관련 한시기구의 정원을 1명은 2002.6.30(1년), 1명은 2002.12.31(1년6월)까지 연장하고 한시정원인 정보화기능 보강인력을 조정함(안 부칙)

양주군조례 제 호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504명”을 “510명”으로 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읍면기능전환과 관련한 정원은 200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 ②(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제2조의 시행으로 인한 과원의 발생시에는 2002년 7월 31일 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③(한시정원) 제2조의 집행기관 정원중 읍면기능 전환과 관련한 정원 2명중 1명은 2002년 6월30일까지, 읍면기능전환 관련 정원 1명과 정보화 기능 보강 관련 정원 2명에 대하여는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한다.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양주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집행기관 : 504 명</p> <p>2.(생략)</p>	<p>제2조(정원의 총수) ----- -----</p> <p>1. ----- : 510 명</p> <p>2.(현행과 같음)</p>